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38,499,153	16,154,975
일반회계	524,986,263	15,749,588
특별회계	13,512,890	405,387
기타특별회계	13,512,890	405,38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14,997	18,450
의료급여기금	429,344	12,880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103,524	3,106
지하수관리	46,367	1,391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193,826	5,815
기반시설	336,420	10,093
주차장	11,788,412	353,65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48,54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9,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회계연도 중의 보조금, 교부금(세)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상환금(차입금, 예수금) 상호간에는 이용할 수 있다.